

## 『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』와 『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』의 상호교류 협약서

**제1조(목적)** “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”(이하 “재활공학과”)와 “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”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)는 상호 협력을 통한 대구광역시 장애인스포츠단 활성화를 위하여,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기로 하고 장애인체육 현장으로의 연계를 통하여 대구지역 장애인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.

**제2조(협약기간)** 본 협약의 계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 단,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3조(업무협약 범위)**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“장애인체육회”는 “재활공학과”와 장애인체육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.
  - 가.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재활공학과 동아리의 봉사활동 인정
  - 나. 장애인스포츠단과 동아리의 화합, 단합을 위한 정기모임 주최
  - 다. 우수봉사자 선정 및 장애인스포츠단 봉사활동 필요 물품 지원
  - 다. 성서운동장 내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홍보
2. “재활공학과”는 “장애인체육회”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연계하고 추진되는 활동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제공한다.
  - 가. 장애인스포츠단 훈련 보조 봉사
  - 나. 장애인스포츠단 서포터즈 활동
  - 다. 장애인스포츠단 대회, 행사 등 봉사 활동
  - 라. 장애인스포츠단 장비 수리 및 관리 보조

제4조(변경 및 해지) “재활공학과”와 “장애인체육회”는 서로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본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2. 협약 이행에 불성실하여 공신력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
3.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협약 해지가 불가피할 때

제5조(비밀유지) “재활공학과”와 “장애인체육회”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및 이용자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상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

제6조(기 타) 이 협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와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이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, 서명하고 각각 1부를 보관한다.

2023. 3. 22.



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 
학과장 이근민

서명 :

이근민



대구광역시  
장애인체육회

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 
회장 홍준표

서명(代) :

홍영숙